

## 고객 신청 서류

-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서**  
(렌탈차량 가능 : 신청자,서명란에 “렌탈계약자명+00렌탈명+00렌탈회사 직인” )
- 2)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 **안내사항 확인서**(꼭 읽고 서명)
- 3) 전기자동차 비공용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 붙임1
- 4) 전기자동차 비공용충전기 설치 이용 **동의서**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공동 주택 (예: 아파트 등) : 붙임2  
+ “입주자 대표위원회 고유번호증” 필수 첨부 하셔야 합니다 : 붙임2+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구성이 없는 공동주택 (예: 빌라 등) : 붙임3  
+ “세대수의 2/3 이상 동의서” 필수 첨부 : 붙임3+
- 5) **실 거주지 확인서**(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설치 주소가 다른 경우)

## 고객 준비 서류

- 6) 차주증명 서류(신청고객 해당되시는 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일반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증  
일반사업자 직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사업자 대표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직원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7) **일반건축물 대장-앞 뒷장 모두제출(실 설치 장소)**  
(일반건축물대장 없으면 “전유부+표제부” 둘다 제출)  
농업업종사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 8) 신청자 **차량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아님)**  
(렌탈차량 가능 : 3년이상 장기렌탈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렌탈차량의 경우 : “렌탈회사 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붙임4
- 9) **차주 신분증 복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건축물대장(앞 뒷장 모두필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아님),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사이트 “민원 24” 이용 (차주본인무관 출력가능)



[2. 유의사항 안내]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 안내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 확인란 “○” 표기, 제일 마지막 “대표자(기관)” (인)란은 “직인” 찍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안내		확인란
(개인정보 동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제조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보조금	(목적외 사용불가) 보조금을 통해 설치된 충전기는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간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근저당 설정 등)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동의) 완속충전기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충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매매제한 안내)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충전기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충전기 구매·설치 및 전기설비공사 등 비용이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동의합니다. 1. 공용 및 부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후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충전기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2.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충전기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방법	(허위신청 등)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할 경우에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보조금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판단하며, 서류누락, 착오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견)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릅니다.	
	(변상)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단순변심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취소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인에게 변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협조) 충전기 설치, 전기인입공사 및 한전 전기사용신청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전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무상 AS기간은 2년 동안 제공됩니다. 무상제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은 유상AS가 제공됩니다.	
충전기 설치·이전	(설치동의)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용주차장 확보, 전기차용 전용계량기 설치 등 설치장소 소유자의 사용승인(2년이상)을 받거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b>※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	
	(설치책임) 본인은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시 충전기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된 공정확인, 물품인수 등은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전설치) 충전기 설치이후 개별적으로 충전기 이전시 소요비용은 신청자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포기	(신청포기) 충전기 설치 후 전기차를 미 계약(전기차 구입포기)시에는 충전기 설치에 투입된 일체비용(설계용역비 및 충전기 설치 공사비)을 본인이 부담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반대에의한 포기) 충전기 설치 사용동의를 받은 후 각 세대의 반대에 의해 충전기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충전기 사용	(운영규정) 공용충전기 및 관리 위탁한 개인용 충전기는 충전기 운영사에 따라 사용규정 및 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별 충전방식(다른 종류의 카드사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아울러 차종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의 위치 및 사용가능 방법에 대하여, 차량 구입 전후 판매업체에 문의하여 정보제공과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완속충전기 사용 시)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일부는 해당 기관 소유의 전기차 운행에 위하여 설치된 비공용 충전기로 개방된 공용충전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주차권리)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해당 공간에 대하여 주차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충전카드 발급)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공공 급속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 접속 또는 전기차 구매회사에서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헬프데스크(☎1661-9408)로 전화하시거나, www.ev.or.kr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위 사항의 이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기관) : (인)

[2. 승낙서\_붙임 1]

## 전기자동차 비공용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기종류	비공용충전기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기 신청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기설치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2019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p>2019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설치승낙)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귀하</b></p>			

[3. 동의서\_붙임 2]

## 전기자동차 비공용충전기 설치·이용 동의서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우 작성)

주소 (도로명)			충전기종류	비공용충전기
입주자 대표 위원회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기 신청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기설치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공동주택내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2019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p>2019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주택명 : 승인(설치동의)자 : (인)</p> <p><b>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귀하</b></p>				

입주자대표위원회 승인입니다. (관리사무소 승인은 불가)



# 실거주지 확인서

□ 거주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등본 주소			

□ 거주 정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거주지 주소							
거주지 임대인 또는 해당지역 통장 (거주사실 확인자)	성명	<u>임대인 성명</u>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와 같이 <u>거주자 성명</u> 의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거주 사실을 신고하며, 향후 신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거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중